

학 칙 시 행 세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학칙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스쿨의 전공(과) 및 코스) (개정 2013.3.1.) (개정 2014.3.1.) (개정 2015.3.1.) (개정 2015.9.1.) (개정 2016.3.1.)(개정 2016.05.01.)

스쿨	모집단위	비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콘텐츠	만화창작전공	
게임콘텐츠	게임전공	
푸드	푸드스쿨	
	- 조리전공	
	- 식품영양전공	
	- 외식경영전공	
패션	패션스쿨	
	- 패션디자인전공	
	- 스타일리스트전공	
뮤지컬	뮤지컬스쿨	
	- 뮤지컬연기전공(연출·극작코스)	
	- 무대디자인·제작전공	
	- 조명디자인전공	
모바일	모바일통신전공	
	스마트미디어전공	
	모바일보안전공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학사행정 전반에 적용된다.

제2조의 2(정보보호) 학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학생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입학 및 등록

제3조(입학)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입학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4조(재입학) ① 자퇴 및 제적된 학생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 47조(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 학생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하는 학생은 재입학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삭제>

④재입학생은 해당학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며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은 학칙시행세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⑤재입학생은 허가된 학기의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조기재입학 한 학생이 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취소원을 제출하여 해당 학기 성적일체를 취소하고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기재입학이라 함은 자퇴 및 제적된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재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⑥ 산업체위탁생이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 할 당시의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에 한한다.

제5조(편입학) ① 편입학 지원자의 성적인정은 해당전공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지원자로서 본 대학에 편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학력조회를 실시하며 조회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6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② 재학생 등록은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 ③,④,⑤항에서 같다)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8.1.)

③ 복학생의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

가. 등록학기 수업일수 1/2(8주)이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의 1/2을 납입하여야 한다.

나. 등록학기 수업일수 3/4(12주)이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 등록학기 수업일수 1/2(8주)이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2.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군입대 휴학을 할 경우

가. 등록학기 수업일수 3/4이후 휴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1)만으로 기말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2) 성적으로 대체하며,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을 원할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개정 2016.3.1.)

나. 등록학기 수업일수 3/4이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3.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군휴학으로 인정한다.

④ 정규학기 초과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학점이 1~3학점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6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신청 학점이 4~6학점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3을 납입하여야 한다.

3. 신청 학점이 7~9학점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2을 납입하여야 한다.

4. 신청 학점이 10학점 이상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유급된 학생 및 수업연한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삭제> (개정 2012.8.1.)

제 3 장 수강신청 및 강의

제7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학연한 기간 중 교육과정 변경으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이 재학연한 기간 중 학기에 개설된 경우는 중복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5.3.1.)

③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고 확인을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부탁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강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제7조의2(인접선택 수강신청) ① 소속이 다른 스쿨 또는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에는 소속 스쿨과 해당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한 학기에 학점에 관계없이 3과목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 그 이상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접 선택 수강신청으로 인한 학급당 수강 인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의 제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인접선택 수강신청으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표시하며, 스쿨성적사정회의 심의에 의해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수강신청학점)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 이상 24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정규학기 이상 수강생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재학생과 총장의 승인을 얻은 학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성적불인정) 학교에서 정한 수강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수강신청변경) 매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개설과목의 폐강, 강의 시간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인이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재수강 신청) ① 학점 미취득 과목의 재수강은 필수 교과목을 우선하여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유사과목을 지정 받아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C+(79점)이하인 경우는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기 이수 성적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한다.

제12조(수강지도 및 처리)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를 확인한 후 스쿨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강의 시간표) ① 강의시간표는 스쿨별로 작성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개강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매학기 강의시간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2(대체과목) 당해 학기 이전의 재수강 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때에는 매 학년도 NCS기반 교육과정개발보고서에 대체과목을 정하여 소정의 심의를 받아 확정해야 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재수강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경우 재수강 대상 과목의 동일 학년, 학기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5.3.1.)

제13조의3(교수요목) 매 학년도 NCS기반 교육과정개발보고서에 개설 교과목의 교수요목을 작성하여 소정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제14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수업준비 일정에 맞추어 강의계획서를 전산 입력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평가계획서) ① 교수요목 및 강의계획서에 근거하여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학기의 평가를 평가계획서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② 중간고사는 '직무수행능력평가 1'로 병행표기 하고, 기말고사는 '직무수행능력평가2'로 병행표기하며 이외에 직무수행능력평가 횟수를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 (신설 2015.9.1.) (개정 2016.3.1.)

제15조(합동강의) 학교운영 및 교육상 필요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동강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6조(휴학)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입대휴학,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1. 군입대 휴학생은 휴학원에 군입영 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의무 군 복무기간 종료 후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군휴학은 1년 단위로 군복무증명서를 제출하고 스킨행정실에 휴학의사를 통보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2. 일반 휴학생은 휴학원에 보호자 연서의 휴학사유서, 지도교수 소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수업일수 1/4(3주)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질병휴학생의 경우는 휴학원에 전문의료 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일반 휴학생이 휴학기간 중에 입영을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한다.
5. 신입생은 입학학기 중 일반휴학을 불허한다.
6. 조기복학, 재입학, 편입학, 전과의 경우는 조기복학, 재입학, 편입학, 전과가 허가 또는 승인된 당해 학기 중 일반휴학을 불허한다.
7. <삭제>
8. 산업체위탁생은 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제19조(복학) ⑥항의 기준을 준수 할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9.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6.10.31.)

제17조(자퇴) ①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에 보증인 연서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퇴한 학생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계적)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제19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매 복학 학기 개시후 3주(21일) 이내에 복

학을 스킨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한다.

② <삭제>

③ 학기 개시 이후 또는 복학 허용마감일 이후 제대하는 복학생의 경우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휴가증사본,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 추천서 등을 제출할 경우 복학할 수 있다.

④ 조기복학 한 학생은 성적취소원을 제출하여 해당 학기 성적 일체를 취소하고 당해 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조기복학이라 함은 복학예정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삭제>

⑥ 산업체위탁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과가 개설되어 있을 경우에만 복학할 수 있다.

제 5 장 교육과정 편성

제2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변천하는 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과목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학과 중복되지 않도록 탄력성 있게 편성한다.

② <삭제>

③ 교육과정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스킨에서 작성하여 NCS기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기개시일 1개월 전에 확정한다. (개정 2015.3.1.)

④ 특별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현장실습) ①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소관업무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1.) (개정 2015.3.1.) (개정 2016.3.1.)

②, ③, ④, ⑤, ⑥, ⑦ <삭제> (삭제 2015.3.1.)

제 6 장 수 업

제22조(수업) ① 수업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② 수강신청자가 15인 미만일 때는 이를 폐강 할 수 있다. 단, 제학 인원이 15인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폐강처리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유아교육과의 유치원실습, <삭제>, 보육실습 과목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23조(휴·결강) ① 담당교수가 사전 연락 없이 수업 시작 후 20분까지 출강하지 않은 교과목은 결강으로 처리한다.

② 결강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결·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스킨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적으로 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스킨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중수업에 따른 결·보강계획을 운영 할 수 없는 경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집중수업 시간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1.)

제23조의2(보강) 휴·결강은 반드시 보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스쿨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강좌별 합반 수업은 불허한다.

제24조(출석) ① 각 교과 담당교수는 교과별 출석부에 수강신청자의 출결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무계출 결석일수가 2주간을 초과하면 출석을 독려한다.

제25조(출석인정) 다음에 해당된 결석자는 증빙서류를 첨부,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	유	출 석 인 정 기간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경우		5일 이내
징병검사		검사당일 + 2일 이내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훈련기간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행사 참여기간
본인의 결혼		5일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		면접당일+2일 이내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기간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허가기간

② 위 인정사항 중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과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성적평가 및 시험

제26조(시험) ①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교과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시험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성적은 학기말 종합성적에 반영한다.

② 실험실습 및 실기교과인 경우 시험을 부과하지 않고 평소의 실제성적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7조(성적평가) ①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평점평균으로 하되 출석, 정기시험<중간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1), 기말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2)> 및 부정기 시험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의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5.9.1.) (개정 2016.3.1.)

② <삭제>

③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1. 성적 취득학점
2. 총점 순위자
3. 3학점이상 과목 다 취득자
4. 위 3개 항목이 같은 경우 동점처리

제28조(과제물 부여 및 부정기 시험) <삭제> (개정 2015.9.1.)

제29조(성적의 인정) 일반 교과목의 성적이 D0 급 이상인 학생은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0조(진급인원) <삭제>

제31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취득한 성적
2.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총 수업일수 중 1/4(3주)을 초과하여 무계출결석)
3.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 5. 제4조 ⑤항, 제19조 ④항에 의하여 취소한 성적
- 6.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7. 중복 수강신청 하여 취득한 성적

제32조(추가시험 및 시험결사자 성적처리) ① 질병검사, 질병(전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 상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해당 교과목 시험일시 이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시험불참원을 스쿨원장에게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기간 중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불참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스쿨원장에게 제출하고, 스쿨원장은 각 과목 담당교수에게 통지하며, 각 과목 담당교수는 반영 비율에 의거, 성적을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9.1.) (개정 2016.3.1.)

결 시 구 분	반영비율	성 적 반 영 방 법
· 국가에서 부과하는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 국가적 재난 및 비상재해로 인한 결시 · 총장이 승인한 학교공무결시	100%	1. 중간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1) 결시자 : 기말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2) 성적 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산출
· 경조사에 의한 결시	90%	2. 기말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2) 결시자 : 중간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1) 성적 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산출
·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결시	80%	

제33조(성적열람 및 정정) ① 성적열람 기간 내 성적열람을 하여야 한다.

- ② 열람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정정 할 수 있다.
- ③ <삭제>

제 8 장 학사경고, 유급, 수료, 졸업(개정 2013.3.1.)

제34조(학사경고) 매학기 마다 성적 평점평균이 1.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1.)

제35조(유급) ① <삭제> (개정 2013.3.1.)

②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육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전에 이수한 성적을 인정한다.

제36조(진급) ① <삭제>

② <삭제>

제37조(졸업 및 수료) ① 당해학과(또는 전공)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충족된 학생으로서 졸업사정회에서 통과한 학생에게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이중 교육과정상 필수 교과목(교

양, 전공)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졸업 및 수료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졸업학점이 충족된 학생이 졸업 유보를 희망할 경우 졸업사정회전까지 졸업유보 신청서를 스쿨 행정실에 제출하면 1년간 졸업을 유보 할 수 있다.

제38조(수업 연한 초과 졸업) ① 졸업대상자 중 정규학기 동안의 미취득 학점이 24학점 이하인 학생으로 졸업에 충족되는 학점을 취득 가능할 경우 수업연한 초과 졸업에 해당한다.

② 취득학점이 80학점(2년제), 120학점(3년제) 이상인 학생이라도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학점을 미취득하였을 경우 수업연한 초과 졸업에 해당한다.

③ 수업연한 초과 졸업대상자의 등록금 납입은 학칙시행세칙 제 6조 4항에 의한다.

④ 수업연한 초과 졸업학년도는 전기 졸업학년도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 9 장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9조(교양) 구 교육과정을 이수했던 휴학생이 복학하였을 때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구 교과목의 교양필수과목이 신 교육과정에 설치되지 않는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40조(전공필수) ① <삭제>

② 폐강된 과목은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 교과목이 학점 변경된 후 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당해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10 장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제41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①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정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스쿨 행정실에 제출하여 스쿨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1.)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민등록번호
4. 기 타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정된 사항은 학적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제 11 장 제증명 발급

제42조(증명서의 종류) 본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 재학생으로 당해학기까지의 등록을 필한 학생
2. 재적증명서 :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
3. 수료증명서 :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학생
4. 졸업증명서 :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
5. 성적증명서 : 기 졸업 자 및 재학 당해 학기까지의 등록과 수강신청을 필한 학생
6. 졸업예정증명서 : 제2학년 또는 제3학년(3년제 학과) 재학생으로 제1학기까지의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성적사정결과 취득학점이 56학점 또는 96학점(3년제 학과) 이상인 학생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경우, 1학기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성적사정결과 취득학점이 130학점(전문 학사과정 취득학점 포함)인 학생. (개정 2016.10.31.)
7. 휴학증명서 : 발급시점 휴학 중인 학생
8. 기타 학업에 관계되는 증명서

제43조(증명서 발급대장 비치)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기 위하여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칙 제6조(등록)3항의 1호에 관한 규정은 2002년 3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집단위 명칭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모집단위(전공, 과) 변경 명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9.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9.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5.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스쿨별(콘텐츠) 규정 주요 내용 <삭제> (개정 2013.3.1.)(개정 2013.9.1.)(개정 2014.3.1.)(개정 2015.3.1.)

[별표 1] 스쿨별(애니메이션) 규정 주요 내용 (신설 2015.3.1.)

스쿨명	애니메이션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공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학 위 이 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애니메이션</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콘텐츠전문학사</td> </tr> </table>		전공명	학 위 이 름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전공명	학 위 이 름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p>1. 학점이수: 6학기 총 120학점 이상</p> <p>2. 전공 이수학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수 학 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애니메이션</td> <td style="text-align: center;">80학점 이상</td> </tr> </table> <p>3. 교양 이수학점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3학점 이상</p>		전공	이수 학 점	애니메이션	80학점 이상
전공	이수 학 점					
애니메이션	80학점 이상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p>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p> <p>가.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운영은 「스쿨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p> <p>나. 스쿨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절차 및 선발</p> <p>2)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학점인정 기준</p> <p>2.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p>					
적용시기	<p>1. 콘텐츠스쿨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애니메이션스쿨 학생으로 편입된다.</p> <p>2. 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2013학년도 콘텐츠스쿨 애니메이션전공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전 콘텐츠스쿨 애니메이션전공 입학자의 경우는 이전의 전공 이수학점 기준을 따른다.</p> <p>3. 교양 이수학점 기준은 2011학년도 콘텐츠스쿨 애니메이션전공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p>					

[별표 1] 스쿨별(만화콘텐츠) 규정 주요 내용 (신설 2015.3.1.)

스쿨명	만화콘텐츠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table border="1"> <tr> <td>전공명</td> <td>학위이름</td> </tr> <tr> <td>만화창작</td> <td>문화콘텐츠전문학사</td> </tr> </table>		전공명	학위이름	만화창작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전공명	학위이름					
만화창작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p>1. 학점이수: 6학기 총 120학점 이상</p> <p>2. 전공 이수학점 :</p> <table border="1"> <tr> <td>전공</td> <td>이수학점</td> </tr> <tr> <td>만화창작</td> <td>80학점 이상</td> </tr> </table> <p>3. 교양 이수학점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3학점 이상</p>		전공	이수학점	만화창작	80학점 이상
전공	이수학점					
만화창작	80학점 이상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p>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p> <p>가.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운영은 「스쿨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p> <p>나. 스쿨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절차 및 선발</p> <p>2)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학점인정 기준</p> <p>2.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p>					
적용시기	<p>1. 콘텐츠스쿨 만화창작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만화콘텐츠스쿨 학생으로 편입된다.</p> <p>2. 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2013학년도 콘텐츠스쿨 만화창작전공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전 콘텐츠스쿨 만화창작전공 입학자의 경우는 이전의 전공 이수학점 기준을 따른다.</p> <p>3. 교양 이수학점 기준은 2011학년도 콘텐츠스쿨 만화창작전공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p>					

[별표 1] 스쿨별(게임콘텐츠) 규정 주요 내용 (신설 2015.3.1.) (개정 2016.3.1.)

스쿨명	게임콘텐츠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table border="1"> <tr> <td>전공명</td> <td>학위이름</td> </tr> <tr> <td>게임</td> <td>게임콘텐츠전문학사</td> </tr> <tr> <td>에코디자인</td> <td>산업예술전문학사</td> </tr> </table>		전공명	학위이름	게임	게임콘텐츠전문학사	에코디자인	산업예술전문학사
전공명	학위이름							
게임	게임콘텐츠전문학사							
에코디자인	산업예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p>1. 학점이수: 6학기 총 120학점 이상</p> <p>2. 전공 이수학점 :</p> <table border="1"> <tr> <td>전공</td> <td>이수학점</td> </tr> <tr> <td>게임</td> <td>80학점 이상(전공필수학점 포함)</td> </tr> <tr> <td>에코디자인</td> <td>80학점 이상(전공필수학점 포함)</td> </tr> </table> <p>3. 교양 이수학점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3학점 이상</p> <p>4. 기타 학년도별 졸업요건은 스쿨원장이 따로 정한다.</p>		전공	이수학점	게임	80학점 이상(전공필수학점 포함)	에코디자인	80학점 이상(전공필수학점 포함)
전공	이수학점							
게임	80학점 이상(전공필수학점 포함)							
에코디자인	80학점 이상(전공필수학점 포함)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p>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p> <p>가.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운영은 「스쿨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p> <p>나. 스쿨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절차 및 선발</p> <p>2)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학점인정 기준</p> <p>2.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p>							
적용시기	<p>1. 콘텐츠스쿨 게임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게임콘텐츠스쿨 학생으로 편입된다.</p> <p>2. 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2013학년도 콘텐츠스쿨 게임전공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전 콘텐츠스쿨 게임전공 입학자의 경우는 이전의 전공 이수학점 기준을 따른다. 단, 에코디자인전공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p> <p>3. 교양 이수학점 기준은 2011학년도 콘텐츠스쿨 컴퓨터게임전공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p>							

[별표 1] 스쿨별(푸드) 규정 주요 내용 (개정 2013.3.1.)(개정 2013.9.1.)(개정 2014.3.1.)(개정 2015.3.1.)(개정 2016.3.1.)

스쿨명	푸드스쿨 (개정 2013.3.1.)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table border="1"> <thead> <tr> <th>전공명</th> <th>학위이름</th> </tr> </thead> <tbody> <tr> <td>조리전공</td> <td>조리전문학사</td> </tr> <tr> <td>식품영양전공</td> <td>식품영양전문학사</td> </tr> <tr> <td>외식경영전공</td> <td>외식경영전문학사</td> </tr> <tr> <td>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td> <td>산업예술전문학사</td> </tr> </tbody> </table> (개정 2013.3.1.)	전공명	학위이름	조리전공	조리전문학사	식품영양전공	식품영양전문학사	외식경영전공	외식경영전문학사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산업예술전문학사
전공명	학위이름										
조리전공	조리전문학사										
식품영양전공	식품영양전문학사										
외식경영전공	외식경영전문학사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산업예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1.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3학점 이상(개정 2013.3.1.)(2015.3.1.) 2. 2012학년도 입학자 및 2012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르는 복학생은 소급적용한다. (개정 2013.9.1.)										
전공진입시기	- 2학년 1학기										
전공 운영계획	- 스쿨단위로 모집하여 1학년 공통과정을 수료 한 후, 2학년 1학기 진입 전, 조리, 식품영양, 외식경영,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중 한 전공을 선택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가.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운영은 「스쿨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나. 「스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선발 및 절차 2)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학점인정 2. 푸드스쿨 이전 푸드스타일리스트과, 플로랄디자인과, 예코스타일리스트전공의 재적생은 푸드스쿨 재적생으로 본다.(개정 2014.3.1) 3. 푸드스타일리스트과,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예코퀵진코스, 푸드스타일링코스) 재적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푸드스쿨의 조리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3.1) 4.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할 수 있다.(신설 2016.3.1.)										

[별표 1] 스쿨별(패션) 규정 주요 내용 (개정 2013.3.1.)(개정 2013.9.1.)(개정 2014.3.1.)

스쿨명	패션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 패션디자인 전공 : 패션디자인 전문학사 - 스타일리스트 전공 : 스타일리스트 전문학사 (개정 2013.3.1.) ※ 학위증에 주코스, 부코스 명기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 교양 15학점 (대학교양 필수 포함) (개정 2013.3.1.) (개정 2013.9.1.) -> 삭제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3학점 이상 (개정 2013.3.1.) (개정 2013.9.1.) (2015.3.1.) - 주코스(전공선택 포함) 21학점 이상 / 부코스 12학점 이상 이수학점기준 일괄적용 (단, 모델코스는 제외 - 모델코스는 주코스 36학점/부코스 12학점이상) -> 삭제 ※ 타 주코스 선택과목 이수시만 부코스 학점 인정 -> 삭제 (2015.3.1.)
코스진입시기	<삭제> (2015.3.1.)
주/부코스 운영계획	<삭제> (2015.3.1.)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 <삭제> (개정 2013.3.1.) - 위 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개정 2013.9.1.) -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 추가

[별표 1] 스쿨별(뮤지컬) 규정 주요 내용 (개정 2013.3.1.)(개정 2013.9.1.)

스쿨명	뮤지컬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뮤지컬연기전공(연출·극작코스), 무대디자인·제작전공, 조명디자인전공, 음향디자인전공 : 공연예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1. 학점이수: 3년제(6학기, 120학점 이상) 2. 세부전공 이수학점(2014학년도 교육과정부터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30%;">세부전공</th> <th>이수학점</th> </tr> <tr> <td>뮤지컬연기</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세부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이수</td> </tr> <tr> <td>무대디자인·제작</td> </tr> <tr> <td>조명디자인</td> </tr> <tr> <td>음향디자인</td> </tr> </table>	세부전공	이수학점	뮤지컬연기	해당 세부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이수	무대디자인·제작	조명디자인
세부전공	이수학점						
뮤지컬연기	해당 세부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이수						
무대디자인·제작							
조명디자인							
음향디자인							
	3 교양이수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3학점 이상 ※2011학년부터 소급 적용(개정 2013.3.1.) (개정 2013.9.1.) -총 13학점(스쿨 교양 8학점 필수) : 2015학년도 교육과정부터 적용 (2015.3.1.) 3. <삭제> (개정 2013.3.1.) 4. 공연과목 이수(2014학년도 교육과정부터 적용) : 정기공연 I, II, 실험극프로젝트, 졸업공연(총 4개 과목) 중 3개 이상 이수						
세부전공 진입시기	1학년 2학기						
세부(코스)전공 운영계획	- 스쿨단위로 모집하여 1학년 1학기 공통과정을 이수한 후, 1학년 1학기말 세부전공 선택고사를 거쳐 세부전공(뮤지컬연기, 무대디자인·제작, 조명디자인, 음향디자인)을 선택한다. 세부전공 및 코스 선택고사는 면접, 실기 등의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스쿨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 2013학년도부터 무대미술전공 졸업시험제도를 폐지하며,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개정 2013.3.1.) -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05.01.)						

[별표 1] 스쿨별(모바일) 규정 주요 내용

스쿨명	모바일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전공명	학 위 이 름
	모바일통신전공 스마트폰전공 모바일보안전공	공업전문학사
	스마트미디어전공	스마트콘텐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모바일스쿨의 졸업요건은 학칙 제28조(교과이수단위)를 따른다(개정 2012.8.1.)	
	1.학점이수	
	전공명	이수학점
	모바일통신전공 스마트폰전공 모바일보안전공	80학점이상
	스마트미디어전공	120학점이상
	2.교양이수	
전공명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	
모바일통신전공 스마트폰전공 모바일보안전공	10학점이상	
스마트미디어전공	13학점이상	
	3.기타 학년도별 졸업요건은 스쿨원장이 따로 정한다.	
코스진입시기	해당사항 없음	
주/부코스 운영계획	해당사항 없음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 모바일스쿨 세부 운영 사항은 '모바일스쿨 운영 세칙'에 따른다. - 위 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개정 2012.8.1.) - 모집이 정지된 전공의 경우 "학칙의 부칙(개정2016.3.1.)제2조"를 따른다. -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별표 1] 스쿨별(유아교육) 규정 주요 내용 (개정 2013.3.1.)(개정 2013.9.1.)

스쿨명	유아교육과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학과명	학 위 이 름
	유아교육과	교육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 대학교양 및 스쿨교양을 포함하여 13학점 이상 (개정 2013.9.1.) (개정 2015.3.1.)	
코스진입시기		
주/부코스 운영계획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졸업요건 중 교양이수는 2012학년도 입학자 및 복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개정 2013.9.1.)	